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14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21	김원이의원 등 25인	'25.1.9.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31	박상혁의원 등 10인	'25.1.9.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31	박용갑의원 등 11인	'25.1.1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국가교통사고조 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07444	이학영의원 등 10인	'25.1.1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599	복기왕의원 등 10인	'25.1.20.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704	이연희의원 등 12인	'25.1.2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297	이상휘의원 등 12인	'25.2.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629	백선희의원 등 14인	'25.4.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61	이수진의원 등 12인	'25.4.14.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745	이인선의원 등 10인	'25.7.2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4.)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는 위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철도사고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고 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 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은 항공·철도·과학기술·안전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철도사업과 관

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 및 위원장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위원회의 안전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는 등 안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6조).

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 족 등의 알 권리를 제고함(안 제28조).

차.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 위원 · 전문위원 · 자문위원 · 지원조직의 직원의 비밀누설금지 및 청렴의무를 신설함(안 제29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카.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를 임명 · 위촉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 ·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부칙).

##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1항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된 자”를 “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 · 철도”를 “항공 · 철도, 과학기술”로,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 · 철도”를 “항공 · 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로,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

자”를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퇴직한 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퇴직한 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한 자”를 각각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

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중 “하되, 연임할”을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

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녹화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

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국 직원”을 “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사고조사의”를 “사고조사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권고 및 건의사항”을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안전권고”를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공개금지”를 “공개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할”을 “공개를 제한할”로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중 “위원 · 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을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 지원조직의 직원”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위원장 · 위원 · 자문위원”을 “위원장 · 위원 · 전문위원 ·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자문위원”을 “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지원조직의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 및 지원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등의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위촉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제16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된 지원조직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p>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u>국토교통부장관</u>이 위촉한다.</p>	<p>② ----- ----- <u>국무총리가</u>-----.</p>
<p>③ (생략)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u>자는</u> 항공·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u>자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로</u>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 -----<u>사람은</u>----- ----- <u>사람으로서</u>----- -----<u>사람으로</u>--- --.</p>
<p>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u>된 자</u> 2. 대학에서 <u>항공·철도</u>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u>있었던 자</u>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u>있었던 자</u> 4. <u>항공·철도</u>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u>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u></p>	<p>1. ----- -----<u>된 사람</u> 2. -----<u>항공·철도, 과학기술</u>----- ----- -----<u>있었던 사람</u> 3. ----- -----<u>있었던 사람</u> 4. <u>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u>----- -----<u>근무한 사람</u> <u>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u></p>
<p>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p>	<p>5. ----- ----- -----</p>

자로서 임명 · 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 · 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 · 경찰 · 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사람으로서-----  
-----퇴직  
한 사람

6. -----  
-----  
-----사람으로서-  
-----퇴직한  
사람

7. -----  
-----  
-----  
-----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  
-----사람은-----.

1. -----  
-----아니  
한 사람

2. -----  
-----  
-----  
-----  
-----  
-----아니한  
사람

3. -----  
-----

<p>에 있는 자</p> <p>&lt;신 설&gt;</p> <p>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 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p>	<p>--있는 사람</p> <p>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4. ----- -----정지된 사람</p> <p>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p> <p>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p> <p>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p> <p>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 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이하 “항공사업자”)</p>
---	---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

<신 설>

<신 설>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해촉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 · 녹화기록의 작성 ·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 · 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① 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

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p><u>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u>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한다.          ③ (생 략)</p> <p>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u>사무국 직원</u>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          ② ~ ④ (생 략)</p> <p>제21조(<u>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u>)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국토교통부장관</u>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p>	<p><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총리령</u>-----.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 -----          -----          -----          -----  <u>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u>(이하 “<u>지원조직의 직원</u>”이라 한다)-----          -----          -----.</p> <p>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의 지원) ① -----          -----          -----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에게-----          -----          -----          -----</p>
--	---

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생 략)

1. ~ 4. (생 략)

5. 제26조에 따른 권고 및 건의 사항

② (생 략)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사고조사  
에 필요한-----  
-----  
-----  
-----.

<삭 제>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  
-----  
-----  
-----  
-----  
-----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  
· 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  
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  
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① 위원

-----  
-----  
-----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  
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  
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  
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  
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① -----

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삭제>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개를 제한 할-----  
-----.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사무  
국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  
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  
-----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  
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  
원”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 지  
원조직의 직원-----  
-----  
-----  
-----  
-----  
-----  
-----  
-----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  
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  
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



른 행정청으로 본다.